

2025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실무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세무사 조휘래

강의자료 다운로드

<https://yredul.net> 접속 후

메인페이지 중간에 “전문가 칼럼” 의 “조휘래 세무사” 클릭

“2025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실무.pdf” 다운로드

I. 2024년도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

1.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재제 근거마련
2.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3. 간이과세자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
4.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5.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6.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7.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8. 매입자발행 세금계사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
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10.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11.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12.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13.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1.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제 근거 마련

종 전	개 정
●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제 ◇(사유)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사업자 <추 가> ◇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미등록 제제 대상 확대 ◇ 좌 동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 좌 동 ◇ 좌 동

(가산세) 2024.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직권등록) 2024. 2. 29. 이후 직권등록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적용대상자) 직전년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 기준금액 인상 ◇ 8천만원 -----> 1억 400만원(30%인상) ◇ 간이과세 범위 연혁 (20년 이전) 4,800만원 미만 (21년~23년) 8,000만원 미만 (24년 이후) 1억 400만원 미만 2024. 1. 1.이후 개시하는 과세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포기 신고 ◇ (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 (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신설>	● 포기신고 철회 근거 마련 ◇ 좌 동 ◇ 좌 동 ◇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 철회 가능 -(대상) 간이과세 포기당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신규사업자 포함)가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절차)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2024. 7.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종 전	개 정
● 면세하는 동물 진료 용역 ◇기타 질병 예방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예방접종, 투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추 가>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 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 고시 용역 -좌 동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2023. 10.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세

종 전	개 정
●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 범위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추 가>	● 면세 대상 확대 ◇ (좌 동) ◇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정)에 부수되는 토지

2024. 7. 1. 이후 공급하는분부터 적용

6.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종 전	개 정
●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대상) 저술, 음악, 무용, 배우, 가수, 감독직업운동가 등 ◇ (요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것	● 면세요건 명확화 ◇ 좌 동 ◇ 개인이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단순업무 보조자는 제외(면세 가능)

해 석 사 례

● 보험설계사 보조자의 필수적 부수 업무 판단 기준 (재부가-742,2007.10.22.)

◇(필수 부수업무) ①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함)
②보험청약서 작성지원 , ③보험증권 전달 등

◇(단순 부수업무)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리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 스케줄 관리 등 비서업무만 수행

7.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 개인, 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용역 *국선번호, 학술연구용역, 직업소개소 용역, 가사서비스 등 <추 가>	● 면세 범위 확대 ◇ (좌 동)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 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2025.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 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발급사유 규정 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소재 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청기한 확대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2024.2.29.이후 발급 및 신청분 부터 적용

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적용대상)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 적용 대상 확대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 사업자 포함 ◇ 좌 동

2024.2.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종 전	개 정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이자율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연 2.9%	● 이자율 상향 조정 ◇ 연 2.9% -----> 3.5%

2024.3.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면제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2025. 12.31. <신 설>	●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 (좌 동) ◇ 2024. 12.31. ●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대상) 개인택시용 간이과세자 구입 자동차 ◇(환급대상) 구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자동차 제조, 판매사 등 ◇(환급추징) 용도 외 사용등 -->본세,가산세 ◇(적용기한) 2025.1.1. ~ 2027.12.31. 2025.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종 전	개 정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 금 관련 제품 ◇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함유량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신 설>	●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비철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좌 동) ● 세금계산서 작성, 제출 보전명령 근거 마련 ◇ 국세청장은 부가세 보전 필요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제출명령가능 *20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 ◇ (개요)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 호텔에서 30일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출국장, 도심)에서 환급 ◇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관광호텔업	● 환급대상 호텔 범위 확대 ◇ (좌 동) ◇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범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2024.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II. 2023년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 사항

- 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의 하향 조정(2024.7.1.부터 8000만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을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한다. (시행령 제114조) (2023. 7. 1. 이후 공급분부터)
- ②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의무 발급대상이 현재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1억원 이상에서, 2023년도 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4. 7. 1. 이후부터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2023. 7. 1. 이후에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68조)
- ③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제외대상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에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호) (2023. 7. 1.이후 공급분부터)

④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종전 거래 건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시행령 제71조의2) (2023.2.28.이후 공급분부터)

⑤ 거래형태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의 착오, 주선거래와 중개거래간의 착오)에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시행령 제75조) (2023. 2. 28.이후 공급분부터)

⑥ 의제매입세액공제(농수산물 및 재활용 폐자원) 신청시 제출 서류에 매입자발행 계산서 합계표를 추가 하였다. (시행령 제84조 제5항)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튜브등의 외화획득 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국외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 하였다.
(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

* 국내 사업장의 국외 로열티 수입/ 서비스(컨설팅) 도 외화입금 증명서 첨부 (영세율)

III. 간이과세자 정리

4,800만원 VS 1억400만원 VS 기준금액 이상 = 사업자 기준

납부 면제 VS 납부 대상 = 사업자 기준

영수증발행 VS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 사업자 기준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사업자 기준

사례1)

사업자 A는 국내 간이과세 사업자 두 곳(B도소매, C부동산임대업)을 보유하고 있다. B사업장의 2023년도 연간 공급대가는 5200만원이고, C사업장의 연간공급대가는 3000만원이었다. 이 경우 간이과세여부, 납부면제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여부는?

- B,C 사업장 합산 매출액(공급대가) = 8,200만원으로 간이과세 유지
- C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부가세 납부면제
- B사업장은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
- B,C 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모두 있음. (사업자 기준 판단)**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에 대하여 명확한 법령은 확인되지 않으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등 답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사업자 기준으로 답변을 주고 있음.

Q. 다른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판단은?

A.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는 모든 사업장(소매업&부동산임대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다만, 소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3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53조 참조

*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등은 면세)의 경우 간이과세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으로 적용하며, 이때 간주임대료를 포함하며, 납부면제 기준은 타 업종과 동일.

사례2)

사업자 A는 국내 간이과세 사업자 두 곳(B도소매, C도소매)을 보유하고 있다.

B사업장의 2023년도 연간 공급대가는 5200만원이고, C사업장의 연간공급대가는 5000만원이었다. 이 경우 간이과세여부, 납부면제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여부는?

- B,C 사업장 합산 매출액(공급대가) = 10,200만원으로 간이과세 유지
- B,C사업장은 모두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 납부 대상
- B,C 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모두 있음. (사업자 기준 판단)

사례3)

사업자 A는 국내 간이과세 사업자 두 곳(B도소매, C도소매)을 보유하고 있다.

B사업장의 2023년도 연간 공급대가는 4700만원이고, C사업장의 연간공급대가는 4600만원이었다. 이 경우 간이과세여부, 납부면제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여부는?

- B,C 사업장 합산 매출액(공급대가) = 9,300만원으로 간이과세 유지
- B,C 사업장 모두 각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부가세 납부면제
- B,C 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모두 있음. (사업자 기준 판단)

***간이과세 사업자 기타 알아둘 사항**

- 1) 간이과세자 여부 판단시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의 의미는 면세매출은 제외한 과세매출만으로 대상으로 판단한다.
- 2)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 간이과세자는 납부면제, 신용카드세액공제, 접대비 한도 등 모두 하나의 사업장으로만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3)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이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일 경우 간이과세 배제 된다.
- 4)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7.25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식 예정신고가 아니므로 다음연도 1.25 확정신고시 1년치 전체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예정부과신고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하여야 한다.

IV. 리스자산 매입세금계산서 특례

1) 일반적인 경우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모두 적용된다.

이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중복하여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리스이용자(임차인)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시설대여업자는 크게 렌트사와 리스사로 구분할 수 있다.

렌트 사업자

- 일반과세자, 렌트비용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공제 대상일 경우 공제 가능

리스 사업자

- 면세사업자, 금융리스는 계산서 등 발행 없음, 운용리스는 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리스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리스대상 자산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전체를 자산가액으로 계산하여 리스료 책정.

리스이용자는 매달 납부하는 리스료에 리스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 함.

현금, 할부등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였을 차량(경차, 화물

차, 9인승이상 승합차)도 결과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차별적 과세문제 발생

2) 리스이용자의 변경

① 금융리스의 경우

- 사업자가 금융리스에 의하여 리스자산을 사용하던 중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차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한다.

ex) 금융리스자산 가액 5천만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2천만원인 상황에서 리스자산 양도시 3천만원(부가세포함)에 이전 한다면 3천만원(부가세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하여야 하며, 처분이익 혹은 처분손실은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이 때 금융리스부채가액이 남아있다면 부채를 승계시키고 차액에 대한 정산가액에 대한 분개도 유념하여야 한다.

② 운용리스의 경우

- 사업자가 운용리스에 의하여 리스자산을 사용하던 중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운용리스자산을 인도하는 사업자(기존 리스자산 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리스자산을 인도받는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그 대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 운용리스 자산에 대한 보증금이 4천만원인 상태에서 리스계약을 이전할 때, 승계받는 새로운 리스자산 이용자에게 보증금 4천만원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받은것에 불과하므로 보증금자산이 예금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임.
만약, 해당 차량의 정상가액을 감안하여 보증금에 더하여 총 5천만원을 받을 경우
보증금을 초과하여 받는 1천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하여야 함.

ex-1) 그렇다면 기존 리스이용자가 보증금외 추가로 받은 1천만원(부가세포함)은 각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기존 리스이용자 = 해당 1천만원(부가세포함)은 처분이익으로 보아 처분 시점
해당 차량 관련 유보잔액과 상계후 처분이익은 당기 인식
그럼에도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연간 8백만원 한도로
유보추인하여 기간별 비용처리

새로운 리스이용자 = 해당 1천만원(부가세포함)은 선급리스료로 회계처리하고
승계받은 남은 리스기간동안 안분하여 리스료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매년 법인세법등에 따라 한도부인계산 하는것임.

ex-2) 만약, 기존 리스이용자가 일부 보증금을 포기

즉, 보증금 5천만원이지만 1천만원을 손해보고 4천만원에 넘기는 경우?

- 기존 리스이용자는 보증금 5천만원 상계하고 차액 1천만원 처분손실 인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한도내 비용처리
- 새로운 리스이용자는 리스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보증금은 5천만원 그대로
자산가액 승계하며, 덜 지급한 또는 기존 리스이용자에게 정산 지급받는
1천만원은 별도 잡이익으로 보아 당기수익 처리하는 것임.

V. 대손상각비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키 포인트

1.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경우 2년이상 경과했을 경우 법인세법(소득세법) 상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

이 경우 외상매출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전액이 외상매출채권이므로 별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대손상각 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법상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한 2년이상 회수가 안되어 대손처리하는 채권에 해당한다 하여도 대손세액공제는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법규정이 2020년도 신설규정으로 2020년 해당 규정 신설 이전 이미 2년이상 회수기한이 경과한 채권의 경우 2년이 경과한 날로 소급하여 해당 일의 확정신고기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정청구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법규정의 해석오류로 판단됨.

2020년 이전에는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

문에 오히려 요건 충족의 기준 규정 자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법인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는 외상매출채권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이상 경과한 채권의 경우 사
업장 기준으로 회수불능을 판단하여 대손상각 판단시점에 손금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 역시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상 대손상각한 사업연도의 확정신고 기한에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상법, 민법, 어음법 등 타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의 경우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가 신고조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유발생한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산입하여
야 하며, 이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 2021년 6월 28일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이 있을 경우

- 1) 2024년 6월 26일 대손상각 결정 한다면,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으로서 2년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대손상각 가능하며,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2) 2024년 10월 31일 대손상각 결정 한다면,
중소기업 외상매출 채권으로서 2년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대손상각 가능하며,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됨.
(상법 및 민법상 일반적인 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2024년 6월 27일부로 소멸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신고조정 사유로 변경되기 때문)

3) 2025년 12월 31일 대손상각 결정 한다면,
상법 및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대손상각은 2024년도 손금산입 대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며, 대손세액공제는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분으로 경정청구 가능.

주의! 타법률상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권의 발생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닌 채권회수절차를
중단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한다면 소멸시효는 완성
되지 않습니다.